

제1회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일 시 2022.12.17

장 소 장영신 학생회관 302호 총학생회 회의실

의사 일정 (생략)

1. 논의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임기 및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신분 발효 기준 논의안
 2. 논의안건 제2호 연도 말 의결기구 진행 논의안
 - 부의 안건 3. 논의안건 제3호 간부장학금 및 격려금 지급 논의안
-

- 출석 인원 (4인)

소속	직책	이름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제 34 대 총학생회장 당선인	강동재
	제 34 대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한정현
	총학생회 임시의장	연승모
	前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 간사

별도로 간사를 두지 않음.

- 서기

별도로 서기를 두지 않음.

안 건

논의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임기 및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신분 발효 기준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2.12.17
안 건 제 출 자 총학생회장 당선인 강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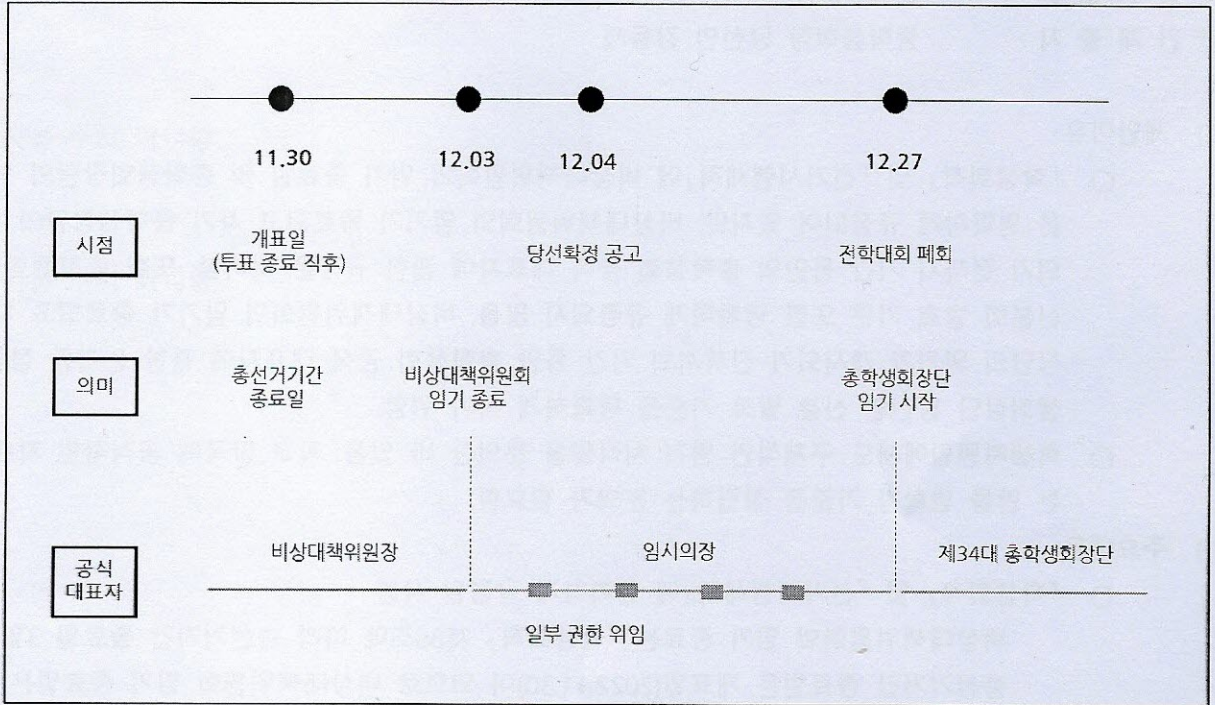
□ 제안이유

-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 및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개시일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총학생회 공식 대표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함. 또한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신분의 발효 기준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총학생회 공식 대표자에 관한 논의를 정립하고,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신분 발효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학생지원팀에서도 구체적인 임기 시작일을 문의한 바 있음. 학교 당국에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논의가 필요함.

□ 주요내용

-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는 「학생회칙」 제86조에 따라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 종료됨. 총선거기간 종료일은 개표일(2022.11.30)이 되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일은 2022.12.03. 차기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학생회칙에서 규정하는 최고집행기관은 부재함.
 -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임기 또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함(2022.12.03 종료)
 - 제34대 총학생회장단으로서 임기 개시는 「학생회칙」 제69조에 따라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시 미정) 폐회 시점부터.
- 논의 사항
 - (1) **제34대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신분 발효 시점:** ① 당선 확정 시점 ② 선거 보고서 채택 시점
 - 위와 같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당선 확정' 이후로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후속적인 조치가 수반될 수 없고(신분 보장), '선거 보고서 채택'은 선거 과정에 관한 심의 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제출, 결산 제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점검에 중점이 맞추어진 심의 과정이므로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신분의 발효는 당선 확정 시점으로 봄이 일반적임.
 - (사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이하 재선거)에서 당선된 원자력 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이 당선 공고(2022.03.16) 이후 선거 보고서 채택(2022.04.27)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 등 의결기구에 원자력및양자공학과와 대표자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당시 원자력및양자공학과도 재선거 이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됨. 이는 선거 보고서 채택과 당선인 또는 학생회장(단)의 임기 개시는 무관함을 알 수 있는 선례.
 - (2) **총학생회 공식 대표자**
 - (배경) 제34대 총학생회장단으로서 임기 개시 전까지, 총학생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부재한 상황.

-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일(2022.12.03)부터 제34대 총학생회장단 임기 개시일까지 총학생회의 공식 대표자는 2022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 논의안건1 의결 결과에 따라 임시의장이 된다고 볼 수 있음. (다음의 그림 참고.)
- 본원 교과과정심의위원회 등 총학생회 대표자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들이 존재함.
- 「학생회칙」 제158조에 따라 현직 총학생회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임시의장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이 협의를 통해 임시의장 임기 만료 이전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아 본원 교과과정심의위원회 등 총학생회 대표자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자 함.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로 한다.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선거기간)

1. 총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총선거시행공고일
2. 예비후보등록기간
3. 총선거위탁기간
4. 후보등록기간
5. 선거운동기간
6. 투표일
7. 개표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투표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0조(당선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없을 경우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선자의 이름, 소속 학부·학과, 학번
 2.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투표율 및 당선자의 득표율
 4. 투표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율을 포함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개표를 하지 못 하였거나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24시간 이내로 공고한다.

제92조(당선 확정)

1.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2.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1.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2.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제158조(인수위원회)

1.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3.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 ARA 공지

- 당선공고: https://newara.sparcs.org/post/246562?from_view=board¤t=1 (2022.11.30 23:06)
- 당선확정: https://newara.sparcs.org/post/246623?from_view=board¤t=1 (2022.12.04 00:27)

논의안건 제2호 연도 말 의결기구 진행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2.12.17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한정현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라 개최하여야 하는 의결기구 정기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회의 일정과 안건 등 수반되는 절차를 논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학생회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수 업무
 - (제167조 및 제168조) 4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제45조 및 제166조) 차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
 - (제43조 및 제90조)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인준 등.

○ 「학생회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한 타임라인

(1) 연도 말 전학대회 12월 27일 개최 시,

- 2022 제19차 중앙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12월 19일 / 20일
*소집공고 시점까지 사업계획서, 예산안, 사업보고서, 결산을 포함한 안건지가 작성되어야 함
- 기층예산심의회의(12월, 임시회의) 및 2022 제19차 중앙운영위원회(12월, 정기회의): 12월 21일 / 22일
- 2022 제10차 전학대회 소집공고: 12월 23일
- 2022 제10차 전학대회(연도 말 전학대회, 12월, 정기회의): 12월 27일

(2) 연도 말 전학대회 12월 30일 개최 시,

- 2022 제19차 중앙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12월 22일
*소집공고 시점까지 사업계획서, 예산안, 사업보고서, 결산을 포함한 안건지가 작성되어야 함
- 기층예산심의회의(12월, 임시회의) 및 2022 제19차 중앙운영위원회(12월, 정기회의): 12월 24 일
- 2022 제10차 전학대회 소집공고: 12월 26일
- 2022 제10차 전학대회(연도 말 전학대회, 12월, 정기회의): 12월 30일

□ 참고사항

- 각 회의체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안건 목록 (참고용)

기층예산심의회의 (12 월, 임시회의)

심의안건 1-17 학부·학과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심의

2022 제 19 차 중앙운영위원회 (12 월, 정기회의)

보고안건 1-26 정기보고 안건

보고안건 27-29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내부호선 결과 보고

인준안건 1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

심의안건 1 중앙집행위원회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심의

심의안건 2 동아리연합회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심의

심의안건 3-5 상설위원회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심의

심의안건 6-9 전문기구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심의

심의안건 10-14 특별기구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심의

논의안건 1 2023 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논의

2022 제 10 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2 월, 정기회의)

- 보고안건 1 의결기구 4 분기 운영보고
- 보고안건 2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및 2022 년도 4 분기 결산
- 보고안건 3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및 2022 년도 4 분기 결산
- 보고안건 4 새내기학생회 운영보고 및 2022 년도 4 분기 결산
- 보고안건 5-7 상설위원회 운영보고 및 2022 년도 4 분기 결산
- 보고안건 8-24 학부·학과 운영보고 및 2022 년도 4 분기 결산
- 보고안건 25-28 전문기구 업무 보고
- 보고안건 29 기층예산심의회의 결과 보고
- 보고안건 30 중앙집행위원회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 보고안건 31 동아리연합회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 보고안건 32-34 상설위원회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 보고안건 35-38 전문기구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 보고안건 39-43 특별기구 2023 년도 1 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 보고안건 44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출 보고
- 보고안건 45-60 학부·학과 학생회장단 선출 보고
- 인준안건 1-3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인준
- 인준안건 4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준
- 심의안건 1 2022 년도 제 34 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심의
- 심의안건 2 KAMF 기획특임위원회 결산 심의
- 심의안건 3 STadium 기획특임위원회 결산 심의
- 심의안건 4 2023 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논의

논의안건 제3호 간부장학금 및 격려금 지급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2.12.17
안 건 제 출 자 총학생회장 당선인 강동재

□ 제안이유

- 2022년도 가을학기 간부장학금 및 2022년도 하반기 격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간부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격려금을 집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장학복지팀 문의 결과, 2022년도 가을학기 간부장학금 대상자 17인 선정 후 학생지원팀으로 공문 발송 요청함.
- 2022년도 하반기(가을학기)를 대상으로 하는 간부장학금 및 격려금 지급을 前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함. (관련 공지 및 공문 발송 포함)
- 2022년도 하반기 격려금 분배 원안을 기준으로 간부장학금 수령 인원을 추산했을 때, 아래와 같은 18인 선정 가능함. (다만, 인성장학금 수령 여부 확인 후 수령했을 경우 제외.)
 - 비상대책위원장단 2인, 비상대책위원회 국장 9인(집행지원실장, 서기실장, 정책국장, 복지국장, 문화기획국장, 사무국장, 재정국장, 디자인국장, 정보국장), 새내기학생회장,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 위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활동보고서 요청 및 활동보고서 수합하여 수령자 명단 확정함.
 - 인성장학금 수령 여부 확인하여야 함. (장학복지팀의 강력한 요청)
 - 상기 직책을 수행하는 인원이 하반기 중 변경된 경우, 前 비상대책위원장 판단.협의하여 수령 대상자 명단 확정.
 - 학교측 입장으로 간부장학금 대상자가 17인에서 감소된 경우에도 前 비상대책위원장 판단.협의하여 수령 대상자 명단 확정.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강 동 재	<u>강동재</u>
한 정 현	<u>J.H. Han.</u>
연 승 모	<u>연</u>
정 우 진	<u>정우진.</u>